퍼스트클래스센터 제공 2023.12.04.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산정 고시 기준 변경 요약

1.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 2)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후)	증감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4	61.1	-0.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8	65.4	-0.4%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9	48.7	-0.3%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3	59.0	-0.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87.1	**+0.5%**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50.1	49.8	-0.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9	60.4	-0.5%

2. 24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제18조, 25조, 28조 등)

<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92	3.04	3.24	3.05	11.46	2.72	3.06	3.34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원)

비교 / 등급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23년 수가	'24년 수가	'23년 수가	'24년 수가
1	81,750	84,240	68,780	71,010
2	75,840	78,150	63,820	65,890
3, 4, 5	71,620	73,800	58,830	60,740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증가액)	184,900	179,600	38,600	35,600	30,500	19,1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1일,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	81,750	16,350	84,240	16,848
2	75,840	15,168	78,150	15,630
3,4,5	71,620	14,324	73,800	14,760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1일,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	68,780	13,756	71,010	14,202
2	63,820	12,764	65,890	13,178
3,4,5	58,830	11,766	60,740	12,148

③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④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12,324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11,111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47,670	7,151

⑤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8,630	5,795	39,810	5,972
	2등급	35,760	5,364	36,850	5,528
	3등급	33,010	4,952	34,020	5,103
	4등급	31,510	4,727	32,470	4,871
	5등급	30,000	4,500	30,920	4,638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30,920	4,638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7	53,360	8,004
	2등급	47,960	7,194	49,420	7,413
	3등급	44,270	6,641	45,620	6,843
	4등급	42,770	6,416	44,070	6,611
	5등급	41,240	6,186	42,500	6,375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42,500	6,375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4,400	9,660	66,360	9,954
	2등급	59,660	8,949	61,480	9,222
	3등급	55,080	8,262	56,760	8,514
	4등급	53,580	8,037	55,210	8,282
	5등급	52,050	7,808	53,640	8,046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0,950	10,643	73,110	10,967
	2등급	65,720	9,858	67,720	10,158
	3등급	60,720	9,108	62,570	9,386
	4등급	59,190	8,879	61,000	9,150
	5등급	57,690	8,654	59,450	8,918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11,412	78,400	11,760
	2등급	70,480	10,572	72,630	10,895
	3등급	65,110	9,767	67,100	10,065
	4등급	63,600	9,540	65,540	9,831
	5등급	62,100	9,315	63,990	9,599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⑥ 단기보호

(단위 : 1일,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	63,250	9,488	70,500	10,575
2	58,570	8,786	65,280	9,792
3	54,110	8,117	60,310	9,047
4	52,680	7,902	58,720	8,808
5	51,240	7,686	57,110	8,567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5분~30분 미만	39,440	5,916	40,760	6,114
30분~60분 미만	49,460	7,419	51,110	7,667
60분 이상	59,500	8,925	61,490	9,224

3.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수당 지급) 신설 (제11조의6, 제11조의 7)

1)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근무기간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공단 승급 교육 이수시 선임요양보호사 지정 1명당 월 150,000원 지급

2) 입소자 50명 이상 75명 미만 : 2명 3) 입소자 75명 이상 : 입소자 25명당 1명

4.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제19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현행 월 6일에서 8일로 변경.**

5. 급여비용 가산, 감산 기준 조정 (주요 변경 사항 발췌)

1) 54조 추가 조항 신설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

2) 63조 급여비용 감액 산정의 유형 (4번 항목 신설)

감액산정 유형	적용되는 기관 유형
1. 정원초과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2. 인력배치기준위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모든 장기요양기관
4.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신설)	**수급자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

4번 항목 관련>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3) 65조 정원초과 감액 (비율 세분화)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0	
5% 이상 ~ 10% 미만	80	
10% 이상 ~ 20% 미만	70	신설
20% 이상 ~ 30% 미만	60	신설
30% 이상	50	신설

4) 66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직종 추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7개 직종 > **시설장, 영양사 추가되어** 9개 직종으로 변경

직종별 결원수	감산점수(변경전)	감산점수(변경후)
0.1명 ~ 0.2명	1점	0.3점
0.3명 ~ 0.5명	1.6점	1점
1명	2점	3점

※ 직종별 결원수 = 배치의무인원수 - 근무인원수

5) 67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산정 특례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0일 유예 조건 완화

▶ 기존 6개월 이상 재직한 종사자가 갑자기 근만둔 경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전까지 30일의 특례를 주던 것을 **3개월 이상 재직**으로 완화함.